

709 호  
1979. 4. 30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경 상 권  
편집 : 문화정보관 김 인 동  
전화 :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 75-6090

# 시 보

## 차 례

◎ 조 례	
제1329호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위원변상조례개정조례.....	3
제1330호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여비조례개정조례.....	3
제1331호 : 서울특별시급수조례개정조례.....	3
제1332호 : 서울특별시지하철운입조례개정조례.....	16
◎ 규 칙	
제1799호 : 서울특별시지하철운입조례시행규칙개정규칙.....	17
◎ 고 시	
제169호 : 도시계획시설(광장)지적승인.....	17
제170호 :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	18
제171호 :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및변경과지적승인.....	18

<이런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1533

제 172 호 :	취락구조개선사업을위한도시계획사업 (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 및시설 ( 도로 ) 지적승인.....	20
제 173 호 :	주택개발제한지역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및건축계획승인	20
제 174 호 :	하천공작물 ( 송수관매설 ) 설치현와.....	21
제 175 호 :	도시계획사업 ( 학교 ) 시행자변경지정.....	22
제 176 호 :	도시계획사업 ( 주차장 ) 시행자명외변경승인.....	22
제 177 호 :	도시계획시설 ( 학교 ) 일부변경지적승인.....	23
제 178 호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지적승인.....	23
제 179 호 :	도시계획시설 ( 학교 ) 지적승인.....	24

㉠ 공 고

제 130 호 :	주택개발제한지역개발사업건축계획및관리처분계획 공람공고.....	24
제 136 호 :	도시계획사업 ( 운동장 ) 완료공고.....	25
제 137 호 :	도시계획사업 ( 학교 ) 완료공고.....	25
제 139 호 :	구로토지구퇴정리사업시행인가공고.....	26
제 140 호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실시계획공람공고.....	26
제 141 호 :	품질검사결과불합격상플수거또는수거파기명령 ( 처분 ) 공고.....	28
제 143 호 :	특정연료사용기기시공업지정취소.....	29

**조 제**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위원 변상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9. 4. 25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원**

◎ 서울특별시조례 제 1329 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위원변상  
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위원비용 변  
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 일비 20,000 원을 일비  
30,000 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여비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9. 4. 25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이창갑 **원**

◎ 서울특별시조례 제 1330 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여비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여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4조 (관내여비) 관내출장에 있어서는 여행거리가 8㎞이상 12㎞ 미만이거나, 여행시간이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 정액의 5할을, 여행거리가 12㎞이상이거나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여행거리가 1㎞ 미만의 출장의 경우에는 여행시간에 관계없이 현지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급수조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9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 **원**

◎ 서울특별시조례 제 1331 호

서울특별시급수조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급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조례는 서울특별시 (이하 "시"라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기타 공급조건등 급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급수장치라 함은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 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 및 이에 직결된 급수구를 말한다.
- 2. 흡수정 이하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 3. 특수 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부담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 4.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 5. 급수사용자등 이라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관리인 등을 말한다.

제 3 조 (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서울특별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한다)이

공익상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 4 조 (급수의구분) 급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 1. 전용급수 : 1호 또는 1개소에 대한 급수로서 전용하는것.
- 2. 공용급수 : 주민이 공용으로 사용 하는것.
- 3. 소화용급수 : 소화용에 사용 하는것.

제 5 조 (권리의무의 승계) 급수장치는 그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하며 취득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 다만, 제 34 조에 의하여 발생된 의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 장 급수공사

제 6 조 (급수공사의승인) ① 급수공사 (이하 "공사"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자 (실수요자에 한함)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공용급수장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설치하거나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 7 조 ( 시공업 허가 ) ①공사의 설계 및 시공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시장의 상수도 시공영업(이하 "시공업"이라 한다)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시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시행하는 상수도 시공기술자격 검정시험(이하 "검정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이거나 그 자격증 소지자 2인이 상을 고용하는 경우 이어야 한다.

③시공업 허가시에는 다음과 같이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검정시험 수수료 : 1건당 10,000원
2. 상수도 시공기술자 자격증교부 수수료 : 1건당 5,000원
3. 시공업 허가증 교부 수수료 :  
신규 1건당 5,000원  
갱신 1건당 3,000원
4. 시공업자 영업장소 변경수수료 :  
1건당 5,000원

제 8 조 ( 공사의 시행 ) ①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이를 시행한다. 다만, 시공업자로 하여금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게 할 수 있으며 설계와 시공방법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②제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구청장 (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요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자재검사 수수료: 사용자재 1개에 대하여 10 원
2. 준공검사 수수료: 1건에 대하여 10 만원 이하의 공사는 2,000 원, 50 만원 이하의 공사는 3,000 원, 50 만원 초과공사는 5,000 원.

제 9 조 (비용부담 및 금수장치의 귀속) ①공사 및 설계의 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고 급수 장치중 육의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양수기는 시의 소유로 한다.

②공사신청인은 제 1항의 공사비 및 다음의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또는 상수도 시공업자로 하여금 설계와 시공을 전부 행하게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급수관의 구경 13% , 50 %  
1건당 1,000 원
2. 급수관의 구경 75% 이상  
1건당 4,000 원

③제 2항의 공사비 선납금은 공사 준공후 정산하여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정한다.

④설계수수료는 공사신청을 취소 하더라도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①시가 시행하는 공사의 비용은 재료비, 운반비, 노력비, 사무비, 도로복구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제 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의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제 11 조 (시설분담금) ①전용 급수 장치의 신설 또는 제조(급수관의 구경을 확대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자는 별표 제 1의 시설분담금별 제 10 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2호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에 대한 공사로서 단일 양수기를 사용 하였을 경우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산정한다. 이때 호별 산정 기준에는 급수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포함한다.

제 12 조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수 가압시설은 시의 소유로 귀속 시켜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시공에 관하여는 제 6 조를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은 제 9 조 내지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 13 조 (흡수정 이하의 설치)

①시장은 다량의 급수사용자 등에 대하여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흡수정 이하의 장치 공사에 있어서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시공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 14 조 (급수장치의 위치변경) 시장은 도로공사등의 시행으로 배급수관의 이전 또는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급수장치의 위치변경 또는 개량이 필요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 15 조 (공사 시행에 수반한 책임) 시장은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미치게 하였다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는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3 장 급 수

제 16 조 (양수기의 설치) ①양수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고 그 설치비용 및 양수기(노후 양수기의 교체는 제외함) 대금은 급수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한다.

②급수사용자 등은 양수기의 설치 교체 또는 보수를 거부 또는 방해할 수 없으며, 양수기를 매몰하거나 양수기의 설치장소에 점점에 방해되는 불건을 적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제 17 조 (양수기의 시험) ①급수사용자 등은 양수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그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 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급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익월 분 요금에서 정산 하거나 환부 또는 추징한다.

제 18 조 (공용급수장치의 관리) ①공설의 공용급수 장치를 제외한 급수장치 에서는 급수판매를 할 수 없다.

②구청장은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한다.

③공용 급수장치의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 19 조 (사설 소화용 급수) ①사설 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 연습용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에는 봉합한다.

②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 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1회 10 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 2항의 연습용 급수에 대하여는 별도 제 2에 의한 사용료를

선납 하여야 한다.

제 20 조 (공익상 급수 제한 정지)

①시장은 재해 또는 급수공사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제한 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②제 1항의 급수제한 또는 정지의 결과 급수사용자 등에게 손해가 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1 조 (급수장치의 폐전, 중지)

①급수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급수의 중지는 3월 이내로 한다.

②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 할 수 있다.

1. 급수 사용자 등이 2월이상 소재불명일때
  2. 정당한 사용없이 2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때
  3. 제 1항에 의한 중지기간이 경과 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재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때
  5. 도시계획 사업등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되었을때
- 제 4장 요 금

제 22 조 ( 급수사용료 ) 급수사용료는 급수사용자 등으로 부터 별표제 2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 23 조 ( 급수관 손료 ) 급수사용자 등 에 대하여는 별표제 3 에 의하여 급수관 손료를 징수한다. 다만, 공용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 24 조 ( 가압료 ) 시장은 특수 가압 시설의 운영실비를 급수사용자 등으로 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압료는 1㎡당 10 원으로 한다.

제 25 조 ( 급수량의 제량조정 ) ①시장은 매월 양수기에 의하여 제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월분의 사용료를 산정한다.

②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월 또는 수시 사용수량을 일괄 제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급수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다.

③종별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출 1개의 양수기로 제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요금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④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수량을 인정할 수 있다.

1. 양수기에 이상이 있을때.
2. 사용수량이 불명일때.
3. 기타 인정제량이 불가피할때.

제 26 조 ( 납기와 징수방법 ) ①급수사

용료, 급수관 손료 및 가압료 (이하 "수도요금"이라 한다)는 매월 분을 익월 말일까지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시장은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 27 조 ( 일시 급수 사용료의 선납 )

①시장은 일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자에 대하여는 급수실정과 동시에 예정사용량을 인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제 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후 이를 정산한다.

제 28 조 ( 가산금 ) 급수사용자등이

수도요금을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수 있다.

제 29 조 ( 수도요금의 감면 ) 시장은

공익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 5 장 관 리

제 30 조 ( 급수사용자등의 의무 )

①급수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오염 또는 누수가



생하지 아니하도록 급수장치를 관리 하여야 하며, 그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급수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사용자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 등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제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③ 급수사용자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게시 하거나 중지 하고자 할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또는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때
3. 급수 용도를 변경 하고자 할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실소화전을 사용 하였을때.
5. 사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 하고자 할때.
6.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제 31 조 ( 급수장치등의검사 ) 시장은 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급수장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급수사용자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 32 조 ( 정수처분 )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수도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제에 규정한 상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자.
2. 급수불 도용한자.  
· 시장의 승인없이 공사를 시행한자.
4. 양수기의 작동을 방해 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로의 포탈을 도모한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p>운영한다.</p> <p>6. 사실 소화전을 무단 사용 하였거나 봉합을 파손한자.</p> <p>7. 정수처분동의 수전을 무단 제 전한자.</p> <p>8.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에 어긋나는 용도에 급수를 사용한자.</p> <p>9. 급수를 남용 하거나 제 18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자.</p> <p>10. 제 16조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한자.</p> <p>11. 제 30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자.</p> <p>12.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자.</p> <p>② 제 1 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1 전 1 회에 3,000 원의 해제 수수료를 징수한다.</p> <p>제 33 조 (양수기의 고의 파손 망실등)</p> <p>① 양수기의 기물을 훼손 하였거나</p>	<p>상실 하였을 때에는 해당 급수 사용자등에 대하여 양수기의 수리 비용을 징수하고 급수를 사용하지 하거나 제 16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양수기 대금을 징수한다.</p> <p>② 양수기의 수리비용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바에 의한다.</p> <p>제 34 조 (과태료) ①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요금, 기타 수수료의 징수를 면한자에 대하여는 그 면한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징수를 면한 금액을 5 배 이내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p> <p>② 제 32 조 제 1 항 제 2 호 내지 제 8 호에 해당하는 자와 기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5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할수있다</p> <p>③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금액의 5 배 이내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p>
--	---

④수전 상호간에 급수를 혼용한 경우에 제1항에 의한 징수를 면한 요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제2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혼용한 양에 따라 산정한다.

제 35 조 (급수장치의 철거) ①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제 6 장 보 칙

제 36 조 (이의신청) ①수도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에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 37 조 (준용) 이 조백에 의한 수도요금과 그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백에 정한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 38 조 (특수공업용수) 특수공업용수 급수에 관한 규정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 39 조 (포상금지급)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징수금액의 5/100
2.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고보하여 처분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처분금액의 5/100
3. 창의적인 제안으로 과징제도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1건당 10만원 이내

②제1항에 의한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따로 정한다.

제 40 조 (양수기점검등 위탁) ①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양수기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와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41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구청장, 출장소장 및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4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1979. 5. 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조례에 의하여 제정된 규칙과 훈령은 이 조례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3. (전동) 이 조례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4. (전동) 이 조례 제 22조의 급수사용료를 격월제로 양수기를 점검하여 부과할 때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1원 미만인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① 1979년 6월징수분 : 조정량의 4분의 3은 종전요금

조정량의 4분의 1은 개정요금

② 1979년 7월징수분 : 조정량의 4분의 1은 종전요금

조정량의 4분의 3은 개정요금

<별표 제 1>

시설분담금액표

구 분	시 설 분 담 액 조	
	신 설	개 조
내 경 13 %	50,000 원	개조시에는 신규 구경별 시설분담금의 차액을 징수한다.
" 20 "	140,000 원	
" 25 "	230,000 원	
" 40 "	590,000 원	
" 50 "	920,000 원	
" 75 "	1,980,000 원	
" 100 "	3,600,000 원	
" 150 "	8,090,000 원	
" 200 이상	14,380,000 원	

※ 내경구분은 양수기구경을 기준한다.

〈별표 제 2〉 가. 급수 사용료 요율표				
구분 용도	1 건 1 개월 기본요금		초 과 사 용 료	
	기본수량 (㎡)	기본요금 (원)	사용구분 (㎡)	㎡당단가 (원)
제 1 종	30	4,000	31-200 201 이상	200 300
제 2 종	20	1,200	21 이상	130
제 3 종	15	400	16-30 31-50 51 이상	50 90 130
제 4 종	500	125,000	501 이상	420
제 5 종	500	27,500	501 이상	70
제 6 종	사용수량 1㎡당 85 원			
제 7 종	100	5,000	101 이상	50
제 8 종	사용수량 1㎡당 200 원			
※ 사실소화권 기본요금은 월 500 원 (1년분할 1회에 징수할 수 있다) 으로 하고 연습사용료는 제 6 종 요율에 의한다.				
나. 급수 종 별 구 분 표				
1. 제 1 종 : 다음에 제기한 업태 및 이와 유사한 업태와 월 평균 200㎡ 이상 사용하는 제조가공업소에 대한 급수				
번호	업 태	적 요		
1	공연장	보험회사, 신용금고등 포함 특수음식점 포함 인삼밭집 포함 보링, 골프, 경구장 포함 가족병원, 안마시술소 포함 사립대학부속병원, 한의원 및 조산원은 제외한다. 종합상가, 아케이드, 슈퍼마켓 포함.		
2	숙박업소			
3	금융기관			
4	음용음식점, 음식점			
5	다과점			
6	유기장, 오락장			
7	의료기관			
8	시장 및 백화점			

번호	업	대	적	요
9	이발소		미장원	제외
10	에식장			
11	수영장, 스케이트장			
12	세탁소		세탁기계 시설이 없는	업소 제외
13	인쇄소, 출판사		인쇄기계 시설이 없는	업소 제외
14	한증막			
15	운송 및 관광업		주차장, 창고보관업	포함
16	차량판매점비		세차장, 검사장	포함
17	화훼, 식목업			
18	학원, 사설학원, 강습소		도서관, 체육관	포함.
19	촬영현상소, 사진관		현상, 인화물 취급하는	디, 피점 포함.
20	식품제조가공업			
21	도살장, 정육점			
22	양조업, 재빙업			
23	제분업, 재당업		방아간	포함.
24	청량음료 제조업			
25	제약 화공약품 제조		화장품 제조	포함
26	염색업		염색이 주업인	경우에 한함. 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27	빌딩		주택건물이 아닌	지하층을 포함한 4층이상 건물
28	도금업		도금이 주업인	경우에 한함.
29	가구류 제조업		자재가공	포함
30	재제소, 목재소		목공소	제외
31	전기 및 전자제품제조업			
32	요업		시멘트 가공제품, 초자제품	포함.
33	합성수지 제조업			
34	피혁제조가공			
35	페인트류 제조업			
36	주유소		석유판매소	제외
37	연료제조		교압가스 제조	포함.

2. 제 2종 : 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다만, 전용면적이 3坪미만인 구멍가게, 양곡소매업소, 연탄소매업소, 연료소매소는 제외)에 대한 급수

3. 제 3종 : 시민주거용 급수 다만  
10세대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에  
서 단일양수기로 제량되  
는 급수를 사용하는 경  
우에는 사용세대당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제 3종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총량을 사용  
세대별로 산출한 평균  
사용량이 1리미만인 단  
수에 대하여는 절상한다.
4. 제 4종 : 가. 대충탕이외에 독탕,  
가족탕, 터키탕, 휴게  
실 사우나 (휴게실과  
접용하지 않는것은  
제외)의 영업을 하  
는업소에 대한 급수  
나. 욕조시설을 갖춘 안  
마시술소에 대한 급수
5. 제 5종 : 대중용 욕탕시설만 있는

- 영업소에 대한 급수
6. 제 6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  
당하는 사업포함) 정당, 사  
회 구호단체, 원호단체, 학  
교, 병영, 국·공립대학부속  
병원, 신문사, 방송국, 한국  
과학기술단체의 연구기관에  
대한 급수
7. 제 7종 : 제 4조제 2호 및 제 6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용급수전에 대한  
급수
8. 제 8종 :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가설한 급수시설에 대한  
급수
9. 사실소화전 : 당해급수시설에 설치된  
양수기를 경유하지 아  
니하고 따로 시설한 소화전

별표제 3

급 수 관 손 로 표

구	정	별	요	금	비	고
13	%		1	건 1	150	원
20	"		"	"	300	"
25	"		"	"	400	"
40	"		"	"	600	"
50	"		"	"	1,200	"
75	"		"	"	2,400	"
100	"		"	"	2,800	"
150	"		"	"	4,000	"
200	"	이상	"	"	5,600	"

\* 구경은 양수기구경을 기준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지하철운임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9년 5월 1일  
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 ㉔

◎ 서울특별시조례 제 1332 호

서울특별시지하철운임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지하철운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내지 제 9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 조 ( 운임수수 ) ①지하철운임은 통산거리 비례제에 의하여 승차거리 8킬로미터까지는 기본운임 60원으로 하고 8킬로미터를 초과하는 1킬로미터마다 4원 63전을 가산하

여 전율로 수수한다.

②운임을 계산할때의 거리산정은 1킬로미터미만의 단수를 1킬로미터로 하고, 운임 및 부과운임 산정은 5원미만을 버리고 5원이상은 10원으로 한다.

제 3 조 ( 승차권의종류 및 운임산정 ) 지하철 구간별 승차권의종류 및 운임산정방법은 별표 1 과 같이한다.

제 10 조, 제 10 조의 2 및 제 11 조를 "제 4 조", "제 5 조" 및 "제 6 조"로 한다.

제 12 조를 "제 7 조"로 하고, 제 2 항의 별표 4 를 "별표 2"로 한다.

제 13 조 내지 제 17 조를 "제 8 조 내지 제 12 조"로 하고, 제 15 조 제 2 항중 "5,000 원"을 "9,000 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승차권의종류 및 운임산정방법

종 류		운 임 산 정 방 법
보 통 승 차 권	일반승차권 ( 1매 )	제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소아승차권 ( 1매 )	일반승차운임의 5 할
정 기 승 차 권	보통정기승차권 ( 월간 )	30 일 × 2 회 × 일반승차운임의 7 할
	통학정기승차권 ( 월간 )	25 일 × 2 회 × 일반승차운임의 5 할
회 수 권	일반회수권 ( 11매 )	일반승차권운임 × 10
	학생회수권 ( 11매 )	일반승차권운임 × 10 × 7 할



비 고	1. 소 아 : 6 세 이상 12 세 미만 인 자
	2. 보통 정 기 : 상 시 동 일 한 구 간 및 경 로 를 승 차 하 는 여 객
	3. 통 학 정 기 : 교 육 법 제 81 조 규 정 에 의 한 학 교 및 시 장 이 지 정 하 는 학 교 원 의 재 교 생 으 르 서 통 학 을 위 하 여 상 시 동 일 한 구 간 및 경 로 를 승 차 하 는 학 생

규 칙

서울특별시 지하철운임조례 시행규칙  
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79년 5월 1일  
서울특별시장 정 삼 천 원

◎ 서울특별시규칙제 1799 호

서울특별시지하철운임조례시행  
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지하철운임조례 시행규  
칙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00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00 조 (과태료의 징수) 조례  
제 10 조의 규정에 의거 제 98 조  
및 제 99 조에 규정된 금지증 또는  
제한증을 휴대하여 승차한 여객에  
대하여 징수함.

과태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령증 : 9,000 원이하

2. 위령증 이외의 금지증 : 5,400 원  
이하

3. 기타 제한증 : 900 원이하

부 칙

이 규칙은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169 호

도시계획시설 ( 광장 ) 지적승인

1. 건설부 고시 제 114 호 ( 79.4.11 )  
로 변경결정된 당시판내 도시계획시  
설 ( 광장 ) 을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건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의 규정과  
건설부 고시 제 41 호 ( 77.3.16 ) 의  
권한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  
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  
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4.26  
서울특별시장

0. 광장지적승인 조서

구분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면경	합정동광장	마포구합정동	50,600	명칭변경 면적추가
	제 2 한강교북단 광장	"	100,800	
기정 변경	제 2 한강교 남단광장	제 2 한강교남단	36,000	면적추가
	"	"	83,400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 제 170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590 호 ( 78. 11. 8 ) 로 시설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도로)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건설부 고시 제 41 호

- ( 77. 3. 16 ) 권한위임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4.25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조서

구분	등급	유별	번호	축원	연장	시점	중점	비고
신설	소로	1	1	10	274	내곡산12-3(대로)	내곡1-1075	
신설	소로	2	2	8	317	내곡1-1075	내곡1-658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 제 171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및 변경과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도로)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제 12 조 및 동법제 13 조와 건설부 고시 제 41 호 ( 77. 3. 16 ) 의 권한위임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및 변경과

-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 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4.25

서울특별시장

로 선 조 세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특원	연 장	기 계	종 결	비 고
신설	소로	2		8	82	가양동 247	가양동 234	
기정	"	3		6	55	홍은동 275	홍은동 273	
변경	"	"		"	"	"	"	일부 변경
신설	"	2		8	300	전관외동 319	전관외동 404	
"	"	1		10	350	상북동 326	상북동산 15	
"	"	3		6-8	34	사당동 324	사당동 324	
"	"	2		8	1240	내곡동산 112	내곡동산 12	
"	"	"		"	110	"	"	
기정	"	3		6	820	평창동 310	평창동 530	
변경	"	"		"	"	"	"	310년 지일 및 가양동내수
기정	"	2		8	330	도곡동 311	도곡동 94	
변경	"	"		"	"	"	"	
기정	"	"		"	170	도곡동 316	도곡동 310	
변경	"	"		"	"	"	"	
기정	"	3		6	165	도곡동 330	도곡동 91	
변경	"	"		"	"	"	"	
기정	"	"		"	80	도곡동 320	도곡동산 21	
변경	"	"		"	"	"	"	
기정	"	"		"	400	도곡동 93	도곡동 112	
변경	"	"		"	"	"	"	
신설	"	"		"	65	" 638	도곡동 638	지적승인 포함
기정	"	"		"	130	" 615	"	
변경	"	"		"	"	"	"	636년 지일 및 일부 변경
신설	"	"		4-6	145	김음동 1274	김음동 625	하 수 도
기정	"	"		6	38	홍제동 123	홍제동 124	
변경	"	"		"	36	"	"	122년 지일 및 위리 변경
기정	"	2		8	206	상월구동 86	상월구동산 1	
변경	"	"		"	260	"	"	위리 변경 및 노선 변경

별첨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172 호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및 시설 (도로)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제 83 호 (79.2.26) 로 결정 고시된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및 시설 (도로)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의 규정

과 건설부 고시 제 41 호 (77.3.16) 의 권한 위임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1과와 도시계획 2과 및 천호출장소 시민봉사실과 도시정비과 및 새마을과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6.4.26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지적승인 조서

마을명	위 치	면적 (평방미터)	비 고
질마을	강남구암사동 104 일대	23,826 평방미터	2,315 평방미터 감소

나.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조서

구분	등급	류별	폭원	연 장	기 절	중 절	비 고
신설	소로	3	6	360	암사동 90-4	암사동 109	질마을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173 호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관리처분 계획인가 및 건축계획 승인

1.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 관리처분 및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공고제 69 호 (79.3.10) 및 서울시공고제 92 호 (79.3.22) 로 공발한바 있는 현저 3 구역과 옥인구역

에 대하여 일부 관리처분 계획을 심의 수정하고

2. 도시재개발법제 41 조 및 동법시행령제 7 조와 주택축전에 관한 임시조치법제 4 조 및 건축법제 33 조의 2 와 동법시행령제 5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동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건축계획을 승인한다.

3. 고시내용

가. 관리처분계획 : (개발통보함)

나. 건락제외					
(1) 건축물의 규모					
구분	층수	건축면적 (세대당)	건폐율	용적율	비고
단독주택	2층	50 이상	50%이하	150%이하	현저3지구
공동주택 (연립주택)	2-3층	"	40-50% "	" "	유인, 현저3지구
공동주택 (아파트)	4층	"	40% "	200% "	현저3지구
복합주택	4층	"	60% "	" "	현저3지구

단, 유인지구는 2층연립은 건폐율 40%이하이며 3층연립인 경우 건폐율 35%이하임.

<p>(2) 건축물의 높이 개개발지구내의 건축물의 높이는 제 1항 규모의 층수이하로 하되 높이 제한에 관한사항은 건축법제 41조 및 동법시행령 제 167조 규정에 따른다. (단, 유인지구 단독주택은 1층에 한한다.)</p> <p>(3) 건축물의 모양 (가) 건축물의 평면은 대지여건에 따르되 구역전체의 경관조성에 저해되지 않은행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지붕은 2층이하의 물체를 둔 박공지붕으로하며 공동주택은 모임 및 박공지붕으로 한다.</p> <p>(4) 건축방법: 주민자택에의한 건축 (5) 건축합의(동의)기간: 79.4. - 79.6.30 (6) 건축기간: 79.5.1-79.12.31</p> <p style="text-align: right;">1979.4.28 서울특별시장</p>	<p>◎ 서울특별시 고시 제 174 호</p> <p>하천공작물(송수관 배설)설치협의</p> <p>하천법 제 6조 동법 시행령 제 7조 및 제 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공작물(송수관배설)설치 협의의를 하였으므로 이를 고시함.</p> <p style="text-align: right;">1979.4.27. 서울특별시장</p> <p>가. 협의년월일: 1979. 4. . 나. 위치: 강남구 삼성내동 361지선삼내천 * 살전동 186지선반천 * 포이동 900지선양매천 * 도곡동 300지선양매천</p> <p>다. 목적: 반월 신공업도시의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키 위한 송수관 배설 라. 협의내용: 위 하천구간에</p>
--	--

D 2,000<sup>㎥</sup> 송수관 매설  
마. 미협외자: 수도권수도건설 사무  
소장

◎서울특별시 고시제 175 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자변경지정

1. 서울특별시고시제 291 호(78.6.15)로 사업시행자 지정된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자를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 하였기 도시계획법제23조 5항 및 건설부 고시제 41호(77.3.16)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4.30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  
동산 191-3 의 필

나. 사업의종류와 명칭: 학교시설사업  
(성보중, 고등학교)

다. 면적 및 규모: 78,542  
(23,759명)

라.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당초: 학교법인 배재학당 이사장

변경: 학교법인 성보학원 이사장  
라. 위치 및 평면도: 별첨(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176 호

도시계획사업(주차장)  
시행자명의 변경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 제 591 호  
(78.11.10)로 도시계획사업(주차장)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 101호(79.3.2)로 도시계획사업(주차장)시행 허가한 마포구성산동 360번지의 47필지에 대한 사업시행자 명의를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제 25 조, 동법시행령 제 25 조와 건설부 고시제 41호(77.3.16) 관한 위임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하고 이를 고시한다.

1979.5.1

서울특별시장

○ 다 음

1) 당초사업시행자: 한국 자동차  
정비사업진흥회 서울특별시 지부  
이사장 한 정 윤

2) 변경사업시행자: 한국자동차  
정비사업진흥회 서울특별시 지부  
이사장 이 윤 화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77 호  
 도시계획시설(학교)일부 변경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78 호(78.4.26)로 시설변경 결정고시된 성동구 관내 사근국민학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고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1 호(77.3.16)의 처한 위임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1 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5.1  
 서울특별시 장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사근국민학교	성동구사근동 229-2 일대	9,491 (2,871평)	
변경		성동구사근동 229-2 일대	16,119 (4,876평)	수 가 2,005 평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78 호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71 호(79.4.25)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고 도시계획법 제 13 조 규정과 건설부 고시 제 41 호(77.3.16)의 권한위임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이 관계조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은평출장소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4  
 서울특별시 장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실선	초로	2		8	300	전판의동 319	전판의동 404	

별첨도면과 같음(도면생략)

<p>◎ 서울특별시고시제 179 호</p> <p>도시계획시설(학교)지적승인</p> <p>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0 호(79.1.10)호 시설결정된 도시계획시설(학교)을 지적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 고시</p>	<p>제 41 호(77.3.16)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 style="text-align: right;">1979.4</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p>
--	---

가. 도시계획시설(학교)지적승인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신설	봉영여자중학교	영등포구양평동 1 가 246 일대	4,991㎡ 1,509.7평

공 고

<p>◎ 서울특별시공고제 130 호</p> <p>주택개량을위한재개발사업건축계획및관리처분계획공람공고</p> <p>1. 건설부 고시 제 294 호(74.8.30) 및 서울시 고시 제 323(78.7.4)로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한남1구역(일부) 및 전농1구역에 대하여</p> <p>2. 도시재개발법제 41 조 및 42 조</p>	<p>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주택개량축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 4 조 및 건축법 제 33 조의 2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과 부합되도록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일로 부터 30 일간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공람에 공한다.</p> <p>3. 본 공고에 대한 서류송달은 개별통지하며 관계도서는 서울시 주택국 주택개량과에 비치 열람하고 있다.</p>
---	--

4. 공고내역  
가. 관리처분계획

지구명	위치	계획면적	비고
한남1구역	한남동 726 번지일대	5,635 평	관계도서생략
전농1	전농동 541 번지일대	8,018 평	

나. 건축계획 : 별첨(주택개량과 비치)

1979.4.28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공고제 136 호

도시계획사업(운동장)완공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 361 호(78.7.21) 및 동고시 제 80 호(79.2.21)로 실시계획인가된 도시계획사업(운동장)이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85조 제 1항과 동법 제 57조 2 의 제 3 항 규정 및 건고시 제 41 호( '77.3.16 ) 권한위임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1과 및 관할 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4.25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중구올지로 7가 일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운동장)야구장 확  
장 및 주차장 설치
3. 사업의 시행면적 : 7,085 ㎡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5. 사업기간 : 1978.7.28-1979.3.30
6. 준공도면 : 별첨(생략)
7. 검사년월일 : 1979.3.23

◎서울특별시공고제 137 호

도시계획사업(학교)완공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 267 호(78.6.5)로 지적승인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 297 호(78.6.16)로 시행허가된 도시계획사업(학교)이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85조 및 동법 제 57 조의 2 규정과 건설부 고시 제 41 호( '77.3.16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1과와 천호출장소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4.26

서울특별시장

(도시계획사업(학교)완공내역)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중구상일  
동 316 의 7 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학교)(상일여자중고등학교)
3. 사업시행면적 : 25,036 ㎡
4.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중구신광동 291-4  
학교법인 홍북학원 이사장 김석하
5. 사업시행기간 : 78.6.20-79.2.28
6. 준공도면 : 생략

◎서울특별시공고제 139 호

구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공고

- 1. 서울특별시공고 제 424 호(78.10.23)로 구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을 공람동고하고 건설부장관에게 사업시행인가신청하였던바 건설부공고 제 37 호(79.3.19)로 시행인가되었기 이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다.
- 2. 건설부 공고 이후부터 환지처분공고시까지 본 지구내에서 경작행위는 물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39 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 변경등이 통제된다.
- 3. 관계도서는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와 영등포구청에 비치하여 보이고 있으며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는 생략하고 이 공고로 갈음한다.

1979.4

서울특별시장

- 가. 사업명 : 구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 나. 사업시행자 : 영등포구 구로동, 도림동, 신도림동, 신길동 각일부
- 다. 사업시행면적 : 1,515,038㎡ (458,297명)
- 라. 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 마. 사업기간 : 79.3.29-83.12.31

◎서울특별시공고제 140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 1. 건설부고시 제 198 호(71.4.7)로 고시된 서울대교 복측 진입로 가각정비공사구간내에 저축 편입되는 토지의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제 25 조의 2 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 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하고자 이에 공고함.
  -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함.
  - 3.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토공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 가. 공고장소 : 마포구청계시관  
 나. 공고기간 : 1979.4.30-1979.5.13

1979.4.28

서울특별시장

<공람개요>

- 1. 사업장위치 : 마포구마포동 34 의 8 ~ 35 의 30
- 2. 사업의 종류와 명칭 : 서울대교 복측 진입로 가각정비공사(도로)
- 3. 사업의 규모 : 아스팔트포장 = 31.9㎡

<p>                     플랜 = 126㎡                      부계 = (3.65 × 4 × 2) 3.40경간                      4.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침                      인가일 : 79.12.31                 </p>	<p>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토                      지조서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                      지수용법 제 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p>
--	--

토 지 조 서

번호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1	마포동 34-28	대	18.8	도화동 9-5	박 준 형
2	" 29	"	170.9	" 4-1	신 두 현
3	" 10	"	6.3	동선동 1가 38	최 승 운
4	" 13	"	67.4	도화동 304	해동의광
5	" 14	"	40	" 9-46	이 계 운
6	" 30	"	25.5	" 304	해동의광
7	" 35-30	"	100.8	" 15	김 형 락
8	" 3	"	131.9	" 291	장 색 호
9	" 31	"	131.6	" 35	"
10	" 32	"	139.8	" 35	"
11	" 33	"	60.5	" 35	김 병 락
12	" 34	"	1.3	대흥동 443	이 금 예

건 물 조 서

번호	지 번	구 조	층진명	소 유 자	
				주 소	성 명
1	마포동 34-8	세명보목세면화습 (점포)	14.69	34-8	박준형

번호	지 번	구 조	층건명	소 유 자	
				주 소	성 명
2	마포동 34-9	북조외중 (주택)	13	35	고병선
3	마포동 35-1, 3, 4, 5, 7, 17	시멘트블록스레트 (공장)	106.94	"	김형박
4	"	시멘트블록스레트 (용토)	39.72	"	"
5	"	철근 및 연외조 평옥개 (주택, 사무실, 창고)	1층 150.47	"	"
			2층 136.31	"	"
			3층 136.29	"	"
			4층 64.89	"	"
			옥탑 3.51	"	"

◎서울특별시 공고 제 141 호

제조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거 및 파기명령 (처분) 하였기 동법 제 5 조 제 2 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공고함.

1979. 4. .

서울특별시 장

공산품품질관리법 제 6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결과 불합격상품

1. 처분대상업체 및 품목

업체명	소재지	품명	규격	불합격항목	처분내용
삼화완구 (주)	영등포구구로동 197-5	완구	F.D6"카 (wind up)	위험부	수거 및 파기명령
우신산업 (주)	영등포구오류동 73-1	알루미늄 압출형재		피막, 알카리접촉성 케이스시험	"
동신산업진흥(주)	동대문구묵동 150	"		알카리접촉성 케이스 시험	"

업 체 명	소 재 지	품 명	규 격	불 합 격 항 목	처분내용
신양금속공업(주)	서대문구 증산동 68-3	알루미늄 압출형재		피막, 알카리접촉성, 케이스시험	수거 및 파기명령
삼흥철강공업사	강서구 신정동 599-6	철 근	D-10 1종	치수	

2. 수거 및 파기기간 : 79.4.30-79.5.10 ( 20 일간 )

3. 처분사유 : 공산품 품질검사 기준미달

◎서울특별시 공고제 143 호

특정연로 사용기기 시공업 지정 취소

열관리법 제 26 조 제 1 호 내지  
제 5 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특정연로 사용기기 시공업지정을 취  
소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 31 조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1979.4.30

서울특별시장

다

음

( 취소일자 : 79.4.30 )

지 정 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취 소 사 유
6	대한공용기계작소	문희철	중구 을지로 2 가 148-33	열관리법 제 26 조 제 5 호
9	진우선비공사	허재호	중구 을지로 4 가 302-7	"
26	(주) 부일기공	박영원	용산구 동자동 43-82	"
35	해성설비(주)	허정태	중구 저동 2 가 47-11	"
118	아주건설(주)	박병재	용산구 이촌동 302-68	"
141	창원설비화학	이동봉	중구 남대문로 4 가 3-1	열관리법 제 26 조 제 5 호
143	도보건설(주)	허보송	용산구 서계동 237-5	"